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0. 2.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9월 13일

나. 발 의 자: 전승관 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3일

라. 상정일자: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4. 9. 2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전승관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구정질문 제도의 경우 구의원이 구정에 대하여 구청장 등을 대상으로 질문 시, 구청장 등이 이에 대해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정질문 당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 조치 상황이나 향후 계획을 전달받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 결과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계획과 처리 결과를 일정기간 안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구정질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정질문(안 제3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구의원이 구정질문 과정에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사안이나 혹은 지적한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이 해당 의원에게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 등을 보고 또는 전달하는 과정에 근거가 없어 신속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등에 제약 사항을 없애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은 일부 조문 정비함.
 - 안 제37조제5항에서는 구정질문의 후속 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
- 검토 결과
 - 구민에게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에 대해서 구의원이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집행기관의 활동 정보를 통한 정책의 변경이나 대안을 이끌어 내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등으로 구정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의원의 구정질문 당시 답변되지 못한 사안 등에 대해서 실제 조치 상황이나 향후 계획을 전달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해 온 바,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계획과 처리결과를 일정기간 안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조례에 근거로 규정하여 구정질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7조제5항은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의 보고라는 강행규정이기는 하나,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규정 하였으므로 적절한 규정의 신설이라 판단됨.
 -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중 일부인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세부적인 계획 및 처리결과 등의 보고는 구정의 각종 현안의 신속한 처리 등으로 구민의 권익에 부합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3
----------	-----

발의연월일: 2024. 9. .

발의자: 전승관, 이규선, 김지연,
유승용, 차인영, 이성수,
이순우 의원(7인)

1. 제안이유

현행 구정질문 제도의 경우 구의원이 구정에 대하여 구청장 등을 대상으로 질문 시, 구청장 등이 이에 대해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정질문 당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 조치 상황이나 향후 계획을 전달받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 결과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계획과 처리 결과를 일정기간 안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구정질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정질문(안 제37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제2항제2호바목”을 “제2항제2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2호사목”을 “제2항제2호바목”으로 한다.

제3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구청장은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